

의안번호	제2620호
의 결	2023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우정욱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3. 5. 10.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정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2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0.

발 의 자 : 우정욱, 김석한, 이쌍자,
김원순, 최두임, 이정숙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양성평등 확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,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기념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, 군수의 책무에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(안 제2조~제3조)
- 나.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현행화(안 제9조)
- 다.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21호

- 예고기간: 2023. 5. 12.(금) ~ 2023. 5. 17.(수) 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양성평등”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여성농어업인 육성”을 “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,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촌정책과장, 축산과장, 농식품유통과장, 해양수산과장”을 “해양수산과장, 축산과장, 농식품유통과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여성농어업인의 날)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양성평등”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<u>여성농어업인 육성</u>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,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: <u>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촌정책과장, 축산과장, 농식품유통과장, 해양수산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해양수산과장, 축산과장, 농식품유통과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8조(여성농어업인의 날) 군수</u></p>

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
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
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
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두 행
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□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.
2. “여성어업인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.
3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.
4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5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6. “양성평등”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
(7.~9. 생략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,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,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여성농어업인의 날) 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한다.

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, 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·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
2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 방향
3.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
 - 가.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
 - 나.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
 - 다.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 - 라.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 - 마. 농어업·농어촌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
 - 바.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
4.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,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